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230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3-08-25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5-01-24



정 보 공 개 서

[컴플리트레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4. 29.

컴플리트레브(COMPLETEREVE)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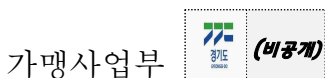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부천시 길주로 234 203동 2층 2002호,2003호(중동 힐스테이트)



02-409-1631



가맹사업부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컴플리트레브 (COMPLETEREVE)	컴플리트레브	경기부천시길주로 234, 2002,2003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8.07.27	이우승	비공개	02-409-1631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786-13-0078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반포삼겹살]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컴플리트레브	-
상 호	컴플리트레브 OO점	-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22-0161654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0		
2022년	-	-	-	45,002		
2023년	-	-	-	98,631		

2)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위와 같은

6. 가맹본부의 임원단 및 사업경력^②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우승	대표	2018.07.27.-현재	컴플리트레브 대표 (COMPLETEREVE)	가맹사업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②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③)
COMPLETE REVE study cafe (상표권)		2022.08.31	40-2022-0161644	이우승	출원중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컴플리트레브] 가맹사업 현황

1. [컴플리트레브] 의 가맹사업 시작한 날: 가맹계약체결사실이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2년 07월 22일)

2. [컴플리트레브]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컴플리트레브 COMPLTERREVE	컴플리트레브	이우승	가맹사업예정임	경기 부천시 길주로 234 2002,2003호

3. [컴플리트레브] 업종

영업표지	업종	
컴플리트레브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서비스	스터디카페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컴플리트레브]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1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1	-	1	1	-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1	-	1	1	-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기 부천시 길주로 234 2002,2003호 컴플리트레브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직영점과 가맹점 수는 영업 중인 점포 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경우 영업을 시작한 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연도의 가맹점 및 직영점 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5. 바로 전 3년간 [컴플리트레브]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해당사항없습니다.

6. [컴플리트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⑥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	-	
서울	-	-	-	-	-	-	-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	-	-	-	-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	-	-	-	-	-	-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해당사항없습니다.

8. [컴플리트레브]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④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	
광고	소계	해당없음	-	-	-	
	TV	해당없음	-	-	-	
	라디오	해당없음	-	-	-	
	인터넷	해당없음	-	-	-	
판촉	소계	해당없음	-	-	-	

	1월 행사	해당없음	-	-	-	
	추석 행사	해당없음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한강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거여역지점	서울 송파구 오금로 512 쌍용아파트 상가 2층	02-3012-333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농협은행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하시거나, 농협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banking.nonyhyup.com/>)에 접속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증서필요) 자세한 예치방법은 농협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전화(02-3012-33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컴플리트레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설비, 오픈행사 등 기타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예외조건)
가입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지급	인테리어 공사 시작 20일전 계약해지	가맹 계약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인테리어 공사 시작 20일전 계약해지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기 부천시 길주로 234 2002,2003호 컴플리트레브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1,000	계약체결과 동시지급	가맹금 미지급, 물품 대금 미지급등	가맹계약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2,000
가입비	5,5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1,000(vat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26,500	4,216			홀매장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지정업체 (미정)	82,500	2,750	공사시작 7일이전	공사시작일 20일전 고지	99㎡ (30평기준) (3.3㎡당)2,750
간판		11,000	366	공사시작 7일이전	공사시작일 20일전 고지	99㎡
필수설비	가맹본부또는 지정업체(미정)	33,000	1,100	계약후 3일이내	공사시작일 20일전 고지	99㎡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별도비용: 철거, 전기증설, 소방, 냉난방, 가스가설공사, 화장실 공사, 각종 기구류, 간판등 견적외 품목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만원(3.3㎡ 당 금액/vat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3일 이전에 당사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 문의처: 당사 점포개발팀

-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점등 분납제도

당사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④
상표사용료	매출액의 3%(월)		다음 월 10일			
리스료		비품렌트시	다음 월 10일			
광고 분담금	광고시	월 매출액 0.5% 등	다음 월 20일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등				
교육훈련비	컴플리트레브	110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⑤	컴플리트레브	견적비용 (15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컴플리트레브	1000-2000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컴플리트레브	견적비용 최소				55페이지 참조

경기 부천시 길주로 234 2002,2003호 컴플리트레브

		2000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3개월마다 지급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컴플리트레브 계약시스템	월 6만원	매월 1일			
지연이자 ^⑥	컴플리트레브	연10 ~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귀하가 운영하는 [컴플리트레브]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공정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7p]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가맹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설비 및 당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메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도 중단하여야 합니다.

② 또한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해

경기 부천시 길주로 234 2002,2003호 컴플리트레브

지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운영매뉴얼 등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만약 계약종료 이후에도 당사를 표시하는 시설을 철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소요된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종료 이후에는 당사에 지급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⑥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이 영업양수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귀하가 [컴플리트레브]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1EA)	공급가격		구분 ^③
		상한	하한	
1	당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반포삼겹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않습니다.

- 2) 당사가 [컴플리트레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①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3 참조]

②[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귀하가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목록은 별도 첨부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③
[별지3]판매상품 리스트 참조	[별지3] 판매상품 리스트 참조	제한없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계열회사
스터디카페 전문점	컴플리트레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50M	가맹계약서에 표시

- ①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채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 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임을 확약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해당 구)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가집니다.
- ④ 가맹본부는 전항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가맹계약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⑤ 가맹사업법 제 12조의4에 따르는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을”과 협의하여 영업지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⑥ 해당영업 지역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 사내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상권(이하 “특수상권”이라 함)은 제외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내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상권”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으로 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협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반포삼겹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컴플리트레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경기 부천시 길주로 234 2002,2003호 컴플리트레브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2) 바로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판매 상품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전용상품의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컴플리트레브]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

경기 부천시 길주로 234 2002,2003호 컴플리트레브

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

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절차

일반계약 해지사유	관련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채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신청된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
○ 가맹점본사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점 본사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점본사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제2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3조 제1항(가맹점의 표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28조 제1항제4호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본사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제28조 제1항제5호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제6호
○ 가맹점사업자가 경업을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가맹점본사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7호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 로열티, 광고, 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을”의 채무가 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제28조 제1항 제8호
○ 가맹점사업자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9호
○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0호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 된 점포설비의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따른 교체·보수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1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1항의 규정(감독 및 시정요구권)에 의한 가맹점본사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가맹점본사에	제28조 제1항 제13호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자점매입)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정한 매뉴얼 기준에 따른 합리적 관리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6호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본사의 가맹점 전체에 대한 이미지 손상행위를 지속할 경우	제28조 제1항 제17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와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8호
○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점본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28조 제1항 제19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8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35조 제3항 제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35조 제3항 제3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4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5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3) 즉시해지 사유 및 절차

위의 일반해지와 달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가맹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가맹계약서
----------	-------------

	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서비스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4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④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가맹사업팀)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기 부천시 길주로 234 2002,2003호 컴플리트레브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0일가량소요)→승인여부통지→상속인,당사의 가맹계약 체결(5일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교육비는 없으나 필수업무 교육 발생시는 실비
대리행사	당사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0일가량소요)→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당사 승인시 가능	-		

가맹점운영권 관련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관련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영업 중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정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행정구역상 동일한 시에서] 귀하가 [컴플리트레브]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스터디카페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가맹사업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컴플리트레브]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24시간	주6일이상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특별한제한없음	직접 근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①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가맹사업팀	문의 (가맹사업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필요시	가맹사업팀	
회계처리 가맹본부 지침사항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가맹사업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컴플리트레브]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당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상품광고	50%	광고비 전체비용 중 50%를 전체 가맹점이 부담하되, 각 가맹점의 부담분은 자신의 총 매출액 비율에 따른다.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광고등의 절차를 거친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이상의 동의시 전체적용)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50%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
	가맹점 개별광고	없음	100%		
개별행사	기타 지역광고의 경우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임의 시행			행사계획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행사 시행 →종료 후 최종분담금회 낙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공동판촉 활동	협의	협의 단,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 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팸플렛, 진단 카드로그등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본의 가맹점사업자 가 균등하게 분담		
--	--	--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 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서도 서면에 의하여 당사와 협력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손해배상액 성격을 갖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6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21조(비밀유지)와 제22조(경업금지)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 이억원(₩20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계약서 제36조 3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반위반일로부터 1일달 삼십만원(₩300,000)을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양당사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6) 가맹계약의 체결 이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7)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제38조(손해배상 및 위약금)내용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8)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합계		50일 내외	[12p~17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당사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당사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컴플리트레브]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컴플리트레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②
신규 교육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실, 문제 발생시 수시교육안내	실습교육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양수 교육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보수 교육	가맹점 운영 정책의 변경, 가맹점 영업 활성화, 가맹점 고객서비스 개선, 가맹점 의견수렴등	실습교육	필요시	필요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컴플리트레브]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6시간	5,500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문제발생시 수시교육 안내
양수 교육	1일	실비	필요시
보수 교육	필요시간	실비	가맹점 운영 정책의 변경, 가맹점 영업 활성화, 가맹점 고객서비스 개선, 가맹점 의견수렴등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개점 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컴플리트레브 본점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34, 2002,2003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20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VAT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비고
7,399,250	월평균매출액

<정보공개서 내용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 지 ◆

1. 원부재료 리스트	별지-1
2. 필수설비/집기 리스트	별지-2
3. 판매상품 리스트	별지-3
4. 재무상황	별지-4
5. 가맹점 순회 점검표	별지-5
6.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별지-6
7.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별지 7-1
8.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별지 7-2



[별지 1] 원부재료 리스트

-해당사항없습니다.

[별지 2] 필수설비 /집기 리스트

[별지 3] 판매상품 리스트

구분	session		정상가격	이벤트가격
정기권	고정석 2주		120,000	96,000
	고정석 4주		200,000	160,000
	4주권		150,000	120,000
	3주권		130,000	100,000
	2주권		105,000	75,000
정액권	200시간	사용기간(200일)	200,000	180,000
	150시간	사용기간(150일)	160,000	144,000
	100시간	사용기간(100일)	120,000	108,000
	50시간	사용기간(60일)	70,000	63,000
	30시간	사용기간(28일)	50,000	45,000
시간권	12시간		10,000	
	9시간		8,000	
	6시간		6,000	
	4시간		5,000	
	3시간		4,000	
	2시간		3,000	

[별지 4] 재무상태

[별지 5] 가맹순회점검표

[별지 6]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점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비고

[별지 7-1]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가맹희망자(가맹사업자)용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 정보 공개서 최종 등록일: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컴플리트레브]의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수령일시:

수령장소:

*가맹본부: 컴플리트레브(COMPLETEREVE) (인)

[별지 7-2]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정보 공개서 최종 등록일: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컴플리트레브]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컴플리트레브(COMPLETEREVE) (인)

제공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제공장소:

*가맹희망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최근 3개년 재무제표

